www.렘포레.com hmh772@naver.com

Lamfore(렘포레)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4103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4.10.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7.16



# 정 보 공 개 서

렘포레 인재개발연구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 렘포레 인재개발연구소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 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24번길 8 (삼산동, 해인빌딩 4층 40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70-4154-774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52-269-778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4154-7744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1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3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5
IV.	가맹점사업지	· 마의 부담 ······· 5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6
VII.	교육・훈련0	∥ 대한 설명 1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21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 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 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 표지		주 소				
Lamfore( 렘포레		<del>네</del>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224번길 8 (삼산동, 해인빌딩 4층 401호)				
인재개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연구소	개인사업자		2009.08.25	황명숙	070-4154-7744	052-269-778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10-28-11875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Lamfore(렘포레)]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Lamfore(렘포레)	책과 그림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자연물 등의 다양한 매체 와 스토리를 통한 감정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감정조절능력 을 발달시키며 정서가 풍부한 아이로 꿈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 및. 유아의 언어 인지 발달, 사회성, 도덕성, 창의성 발 달에 중점을 둔 유아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구 성된 선진국형 유아 교육 프로그램 전문 프랜차이즈임
상 호	Lamfore(렘포레) 0 0 렘포레	
상표(서비스표)	Lanfore	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14-0016155호 등록번호 : 제41-0318661-0000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27,579	-	-
2022년	-	-	-	15,511	-	-
2023년	-	-	-	61,298	-	-

[당사는 개인사업자(학습지,교재,서적)로서 재무제표 의무작성 사업자가 아니므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별첨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이르 처 지의	사업경력				
- 신인어구 -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황명숙	대표	2009.08.25~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비관 련임원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 B	상근	비상근	그 전포(0)	
2023년 12월 31일	1	-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Lamnfore(렘포레)	제품 사용 및 대가	2014.04.24 출원	제41-2014- 0016155호	황명숙	2025.04.08
(서비스표권)	수수	2015.04.08. 등록	제41-0318661-0000호	30 1	2023.0 1.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Lamfore(렘포레)]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4년 08월 28일

2.[Lamfore(렘포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렘포레	Lamfore	황명숙	2014.08.28~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24번길 8
인재개발연구소	(렘포레)	807	2011.00.20	(삼산동, 해인빌딩 4층 401호)

#### 3.[Lamfore(렘포레)]업종

영업표지	업종				
Lamfore(렘포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유아교육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Lamfore(렘포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1	21	-	17	17	-	20	20	-	
서울	-	-	-	-	-	-	-	-	-	
부산	7	7	-	7	7	-	8	8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1	1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3	3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6	6	-	4	4	-	5	5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Lamfore(렘포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6	-	5	-	-	21
2022	21	-	4	-	-	17
2023	17	4	1	-	-	20

[별첨 2 : 가맹점 목록]

6. [Lamfore(렘포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초도 프로그램 제공으로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렘포레 가맹점사업자는 전부 면세사업자로서 당사의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 8. 렘포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렘포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2,173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에 [Lamfore(렘포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 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5~26]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원/부가세 포함)

그ㅂ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구단 구인	구긴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합계	-	-	-	-	-	
	-	-	-	-	-	
광고	-	-	-	-	-	
9.1	-	-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해당없음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대현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	052-269-55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기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Lamfore(렘포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부가세 별도)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0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20,000	계약체결과 동시	당사의 귀책사유가		
교육비	5,000	지급	있을 경우	소멸성 비용	
프로그램비	5,000				

[귀하는 가맹점 가맹영업을 개시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때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해당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33,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3,000]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	22,000
교육비	5,500
프로그램비	5,500

<sup>4)</sup>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132.232m² 기준)

구분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2,350]	[1,095]			
필수설비(정착	물: )	가맹점 임의 선정 업체	5,500	137.5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내부공사	가맹점 임의 선정 업체	30,800	770	업체와의	공사 전 계약	기준
(점포 내장공사)	간판	기 6 급 급의 현 6 급세 -	3,300	-	계약에 의함	취소	시방서 제공
초도물품		당사	2,750	-			교구,책 등(별지 참조)
기타 개점에 소요!	리는 비용	해당 없음	-	-			

[귀하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인테리어 표준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 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①대한민국 국적과 국내거주 ②학원법이 정하는 설림인의 자격요건 ③ 교육시설, 강의실, 상담실 및 원장실 구비, 기타 학원생 교육에 필요한 물적, 인적 조건 구비
종업원(강사)	4년제 대학 졸업자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학원 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를 채용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Lamfore(렘포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가맹금 분할 납부: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불로 납부받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워,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프로그램 월 사용료	당사	440	익월5일	프로그램 미 공급	소멸성 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점사업자 자율 선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ul><li>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li><l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19]쪽 참조</li></ul>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교재 등 상품대금지급기한을 경과 시 부담
교육 훈련비	당사	100/1인당	교육 실시 2주일 이전	교육미실시	소멸성 비용	<ul><li>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li><li>1.2 참조</li><li>(교재 교육,가맹점 운영 관리)</li></ul>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점사업자 자율 선정	3,3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	-	-	-	별도 부담액 없음
광고·판촉	-	-	-	-	-	별도 부담액 없음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가 강제하는 구입요구품목은 가맹점 사업운영에 필요한 교재(주로 동화 서적류)로서 공급처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직거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품목과 수량이 일정치 않을뿐더러 물품공급 과정에서 당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바 또한 일절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환경,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장의 환경 상태 감독,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시설기자재, 교재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시설기자재, 교재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강사채용 및 관리	적정한 강사의 채용 여부, 관리, 교육 등 점검	분기별 1회	
재고관리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교재 등을 비치 여부	분기별 1회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 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 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Lamfore(렘포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프로그램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Lamfore(렘포레)』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상호·로고· 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Lamfore(렘포레)』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당시 당사에게 공급받은 교재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하에 교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 ·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Lamfore(렘포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 당사는 렘포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템포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감정드라이빙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 공급 제한 및 중지,	
10트다이라	상품(교재)을 판매할 수 없음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점 외에서 개인 및 그룹의 불법과외	1)항의 상품명과 동일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손해배상 부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프로그램)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감정드라이빙	150,000	홈페이지에 공지	2021.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 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승물만 밥이 담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교육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Lamfore(렘포레)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의 이격거리는 반경1.5Km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 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 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렘포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Lamfore(렘포레)]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연장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프로그램월사용료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나목
○ [Lamfore(렘포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 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3항 제3호 제라목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 해지, 약정해지사유, 즉시해지사유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합의해지

당사와 귀하는 각 본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약정 해지 사유

#### <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Lamfore(렘포레)』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귀하가 학원법에 의한 설립요건,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보유, 학원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제36조 제1항제1호
불비하였을 경우	세30고 세18세1로
2.프로그램 월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6조 제1항제2호
3.귀하가 당사의 개원 승인 보류 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제1항제3호
4.영업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4호
5.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6조 제1항제5호
6.경영지도 및 규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는 교재를 무단사용, 외부 유출, 무단 복제, 불법 과외 등을 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7호
8. 가맹점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제1항제8호
9.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9호
10.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제10호
11.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한 경우	제36조 제1항제11호
12.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처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1항제12호
1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제1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2) 즉시해지 사유

#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7조 제1항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 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 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 하는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37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학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44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li>○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li> <li>○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li> </ul>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프로그램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Lamfore(렘포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가맹점 운영 및 교재, 부교재 판매	해당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Lamfore(렘포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의 경우, 학원법 및 시. 도 조례에 따름	제한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강사)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가맹점 청결(4항목)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캠퍼스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가맹본부 지침사항(5항목)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지침사항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Lamfore(렘포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교	
TE	정보 경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교시	이끄
	상품광고	전액부당	없음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L'11 S'1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L 1 3·1)
개별 행사 (방학캠프, 지역 홍보)	개별 행사 방학캠프, 지역 가맹점 임의로 시행 : 가맹점 전액 부담 기계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1조[비밀유지의무], 제22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5~7]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29	
가맹금 예치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최초상품공급	- 초도물품 지급	D-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 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아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민적으로 인정라는 경우 아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맹시업기통활성을 유자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이 공사 비용장비잡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로는 알차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로는 비용은 제외)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빈하지 않는 점포환경》썬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빈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의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컴취 → 3차에 걸쳐기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나에 기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당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Lamfore(렘포레)]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가맹점운영 서비스교육	방문 교육	가맹점 개원 전	개원 전 교육
정기 교육	교재 교육 리더쉽 교육 가맹점 운영 관리	방문 교육	계약기간 중	매년 필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Lamfore(렘포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5,500(가맹금내 포함)	
정기 교육	4시간	100/1인당	일정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피고용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학원 개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2	-	-	-

- o 직영점 없음(해당사항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년 개월	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70-4154-77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 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렘포레.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초도물품 공급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5; 인근가맹점 현황 목록>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보관용>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보관용>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